

2009-2010

# 권리와 의무

학생 , 학부모  
및  
교직원용

Federal Way 교육구 소속 공립학교  
31405 - 18<sup>th</sup> Avenue South  
Federal Way, WA 98003  
(253) 945-2000

웹사이트 : <http://www.fwps.org>

## 교육구에서 하는 기대 사항

헤드럴웨이 교육구는 학생들의 성적을 최대로 높이는데 필요한 여건 조성을 하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법적보호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

- 학교내의 교직원, 부모, 다른 학생들 모두에게 경의를 나타내어야 한다.
- 매일 정시에 등교하고 수업에 참석하여 수업준비를 하고 최고 수준의 학력을 달성하도록 한다.
- 학생이 알아야 되는 지식과 행동을 배워 나가도록 한다.
- 항상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한다.
- 권리와 의무 책자와 학생의 학교 규칙을 읽고 이해하며 실천한다.

교직원들은 :

- 학교내의 학생, 학부모, 기타 다른 교직원 모두에게 경의를 나타내어야 한다.
- 매일 정시에 출근하여 의미있는 활동 범위로 수업을 시작한다.
- 학생의 학력과 행동에 대하여 명백한 목표를 설정한다.
- 학생이 배워야 되는 지식과 행동을 가르친다.
-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학생과 부모와의 동반관계를 육성한다.
- 학생의 학과목 진도와 성적과 관련(특히 졸업 필수조건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와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 권리와 의무에 관한 책자와 학교 규칙을 읽고 이해하며 그 시책과 규칙을 준수한다.

학부모 / 법적 보호자는 :

- 학교내의 학생, 교직원, 다른 학부모들에게 경의를 나타내어야 한다.
- 매일 자녀를 정시에 등교하도록 하여 학생이 제시간에 수업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배움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해 주도록 한다.
- 자녀가 하는 공부를 감독하고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교사와의 동반관계를 맺어야 함은 물론, 자녀의 졸업에 필요한 학과목 진도를 알아야 한다.
- 자녀의 학과목 진도 및 성적과 관련하여 교사와 정기적으로 의논한다.
- 권리와 의무에 관한 책자와 학교 규칙을 읽고 이해하며, 자녀가 이들 시책과 규칙들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대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각 학교는 이상에서 언급한 항목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여, 각 학교의 통신 시스템으로 그 해결책을 학부모님께 알려 드릴 것입니다.

친애하는 Federal Way 공립학교 학부모님께,

2009-2010 학년도를 맞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육구는 모든 학생들이 학문적 우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저희 교육구는 학교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노력해 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귀책 학생과 함께 이 “권리와 의무” 책자를 검토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특히 주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학생 성취:**

- **학업 성취** - Federal Way 공립학교의 사명은 모든 학생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성원이 되도록 학업능력 및 책임 행동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서로 공동으로 노력할 때만 학생 개개인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출석** - 정기적인 출석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출석 습관을 갖도록 개발하는 것은 학생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며, 나아가 직장생활을 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귀책의 자녀들에게 정확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하여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제 13 조).

#### **학생 안전:**

- **방화** - 지난해 우리는 방화로 화재를 당하는 아픔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상해는 없었지만, 이러한 일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이에 대응해야만 하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소모한 비용은 지역으로서는 큰 손실이며, 응급사태에 놓인 시민들을 구제해야 하는 그들의 업무를 마비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귀책 학생에게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관해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구는 경찰당국에 온전히 협조할 것이며, 책임이 있는 방화자를 검거, 기소 및 감금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 이러한 방화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학생은 그 즉시 당 교육구로부터 제적될 것입니다. (제 2 조).
- **폭탄 / 폭파 위협** - 학교는 지금도 폭탄 / 폭파의 위협으로 학교 수업일에 계속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들 모든 건수가 속임수로 판명되었지만 이러한 장난들은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였고 학교 수업일에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책 학생에게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구는 경찰당국에 온전히 협조할 것이며, 책임이 있는 방화자를 검거, 기소 및 감금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 이러한 폭탄 / 폭파 위협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학생은 그 즉시 당 교육구로부터 제적될 것입니다. (제 2 조).
- **사이버상의 괴롭힘 / 불링** - 휴대폰과 온라인을 사용하여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괴롭힘, 위협 및 불링 (약한자를 괴롭히는 행위) 등은 절대 그대로 묵인되지 않습니다. 귀책 학생이 전자기기를 함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이해시키시는 것은 물론,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관해 인지시켜 주십시오. 또한 자녀가 괴롭힘이나 위협 또는 불링을 당할 경우 즉시 교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 14 조).
- **괴롭힘, 위협 및 불링 (약한자를 괴롭히는 행위)** - 교육구는 모든 학생들, 교직원들, 자원봉사자들 및 후원자들의 안전과 예의 바른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교육구는 이들 행위들을 절대 그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인지시켜 주십시오. 괴롭힘 (성적이거나 악의적인 행위)이나 위협 또는 불링을 당할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에게 그 문제를 알려야 합니다. (제 14 조).
- **안전** - 안전은 언제나 저희 Federal Way 공립학교의 주요 현안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 중,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으시면 이 책자 뒷면에 나와 있는 학교 보안 신고번호 (Safe Schools Tipline) 로 꼭 신고해 주시기를 학생, 부모 및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권합니다.

#### **정보:**

- **교육의 기회 균등** - Federal Way 공립학교는 제 22 조에 의거해 모든 연방규칙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학생도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임신여부, 혼인여부, 성적취향 또는 성적 정체성 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지각 장애여부를 이유로 들어 불법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동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거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 - 제 20 조에 PPR(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 - 학생의 권리보호 수정조항) 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교육구 공공 기록부 입수** - 제 21 조에 해당 교육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부 검토 및 사본 획득 권리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자녀의 교육과 앞으로의 인생 기술 개발에 있어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가 밝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omas R. Murphy  
교육감

## 목차

머리말		1
제 1 조	정의	2
제 2 조	학생의 행동규범	3
제 3 조	학생의 운동 / 활동규정	6
제 4 조	담배 , 알코올 , 불법마약 및 심리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 환각제	10
제 5 조	통신 / 전자기기	13
제 6 조	학생복장	15
제 7 조	전자메일 , 인터넷	16
제 8 조 19	버스통학 행위	
제 9 조	학생의 부정행위에 따른 결과	21
제 10 조	교정조치 부과 절차	22
제 11 조	교정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25
제 12 조	학생의 제반 기록 보관	26
제 13 조	출석	27
제 14 조	괴롭힘 , 위협 ( 협박 ) 및 불량행위 (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	32
제 15 조	학생과 학생의 소유물에 대한 수색	36
제 16 조	교내에서의 약물복용	37
제 17 조	아동보호 문제	37
제 18 조	아동보호소 (CPS) 에게로의 보고	37
제 19 조	학생 교육기록부	38
제 20 조	연방프로그램의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38
제 21 조	교육구 공공기록부 입수	39
제 22 조	교육의 기회균등	39

## 머리말

헤드럴웨이 교육구에서는 학생들이 책임과 자제심을 갖춘 사람이 됨과 동시에 유능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규칙과 행동규범을 지키는 것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헤드럴웨이 교육구는 교정조치 과정에서 부모와 법적보호자가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학교 담당자는 이러한 목적 하에 학생의 학칙 위반 문제 해결에 가능한 한 부모, 법적보호자 및 학생이 모두 참가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헤드럴웨이 교육구의 교정조치는 인간주의와 각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는 사상에 그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구의 방침은 훈육이 학교 프로그램의 유지와 개인 전체의 긍정적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개념에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행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책자는 워싱턴주 개정법 RCW 28A.600.010 와 적법절차에 입각한 학생의 권리를 실체적이고 절차적으로 규정하는 워싱턴주 행정법 180 장 40(WAC Chapter 392-400) 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책자에서 언급하는 모든 해당 위원회의 정책, 절차, 법규 및 규정에 관한 사본은 교육감실이나 교육구 웹사이트, [www.fwsd.wednet.edu](http://www.fwsd.wednet.edu) 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자는 마약이 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법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P.L. 101-226) 에 따르며, 행동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의무적입니다.

헤드럴웨이 교육구 학교의 졸업 학점 획득에는 반드시 필수과목을 완수해야 하며 최소한 “C”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제 1 조 정의

(절차 3300P)

**징계** - “징계”란 정학, 퇴학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정조치 처벌을 의미하며 해당 수업시간의 나머지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에서 배제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징계는 또한 학교의 체육프로그램이나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교육구축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대표 되는 기타 유형의 활동에서 해당 학생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긴급제적** - “긴급제적”이란 학생 자신에게 뿐만아니라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게도 즉각적이면서 계속적인 위협을 주며 수업을 진행하는데 급박하면서 계속적인 위협을 야기시킴으로 인해 무기한 학교 출석이 즉시 금지됨을 의미한다.

**긴급퇴실** - “긴급퇴실”이란 학생의 존재가 본인자신에게나 다른 학생에게 또는 교직원에게 급박하면서 계속적인 위협이 되거나 학교수업, 학과목, 학교활동 혹은 수업진행에 즉각적이며 계속적 방해위험이 될 때 수업, 학과목 또는 학교활동으로부터 즉각 학생을 제거함을 의미한다.

**제적** - “제적”이란 어떤 과목이나 수업, 또는 전과목이나 수업 전체에 대하여 출석이 무기한 거부됨을 의미한다.

**장기정학** - “장기정학”이란 수업일수로 연속 (10) 일을 초과하는 정학을 의미한다.

**부모** - “편부모”나 “양친”이란 친부모, 양부모, 자식과 동거하고 있는 부모, 법적보호인 모두를 의미한다. 성인인 학생은 부모가 가지는 권리가 부여된다.

**학교 업무일** - “학교 업무일”이란 교육구의 교육감실이 교육 업무의 수행을 위해 일반에 공개되는 날을 의미하며, 토요일, 일요일, 기타 연방공휴일 및 학교 공휴일 등은 제외된다. 학교 업무일은 해당일에 대한 상기의 직무가 종결되는 날 종료한다.

**단기정학** - “단기정학”이란 연속해서 수업일수 1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정학을 의미한다.

**정학** - “정학”이란 단일 수업 또는 과목에 대해, 혹은 전체 수업 또는 과목 일정에 대해 지정된 기간 동안 출석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조치를 목적으로 해당 학기의 잔여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는 제외).

## 제 2 조 학생의 행동규범

(정책 3240)

학생들은 모든 연방법, 주법, 지방법, 교육구의 정책, 학교버스 규정, 체육 및 활동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교사, 학생 동료교사, 대리교사, 교육보조원, 교장 또는 기타 승인된 학교직원의 합당한 관리하에 있을 때는 그들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들 규칙과 규정에 참가하여 교육구안에 있는 각 학교는 학생의 행위 및 그 학교에 적용이 가능한 수정조치를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기에 명시된 것과 상반되지 않게 추가로 규칙과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수업진행에 실제로 방해가 되거나 사실상 방해가 되는 행동은 금한다. 다음에 열거된 위반사항은 행위를 일반적으로 상술하고 있지만 꼭 그렇게 한정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에 특정한 행위가 수업이나 교육구활동에 실질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러한 행동은 특히 학교구내, 학교주관 운송수단, 학교외 행사나 학교대지 밖에서 금지된다.

별표모양 (\*) 으로 표시된 행위는 예외적인 부당행위를 가르키며 시민특별위원회에서 다음두 항목을 판정하였다. (a) 여러 번 징계조치로 부당행위를 통제하려고 과거에 여러 차례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빈도가 높은 행위 (b) 본질상 너무 심각하고 / 심각하거나 학교운영에 방해라는 면에서 볼 때 너무 중대하여 첫번째 위반으로 학생이 정학 (단기, 정기) 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이러한 부당행위는 제 9 조 B, 제 10 조 F, 와 제 10 조 H 에서 규정된 여건에 따라 제적 또는 긴급제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교육구는 두 별표(\*\*) 로 표기한 행위와 관련하여 무관용 정책 (제 9 조 B 참조) 을 두고 있다.

**\*\* 방화** - 고의나 악의로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 폭행** - 타인에게 완력이나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 다른 사람 ( “암살 ( 공격 ) 대상자 명단” 포함 ) 을 죽이겠다고 위협 행위는 제 9 조 B 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관용에 해당되는 부당행위이다.

본 정의 규정에 따라 제 3 자에 대하여 완력이나 폭행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그 수단이 구술로든 서면이든 그 외 다른 방법을 막론하고 폭행으로 간주되며 또한 용서받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위협은 행동규범에 관한 다른 규정의 위반도 된다.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들과 완력이나 폭력으로 대립하는 학생은 워싱턴주 개정법 RCW 28A.635.090 에 의거하여 정학이나 제적조치가 즉각 취해진다.

**출석** - 학생은 위원회 시책에 따라 학교에 정규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 제 12 조 참조 ).

**\* 폭탄위협** -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에 대한 폭탄위협이나 훼손은 금지된다.

**\* 교정침입** - 절도를 목적으로 학교에 침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부정행위** - 어떠한 학교과제나 시험 또는 프로젝트, 학교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준비하거나 완수하는데 있어서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은 금하며 타인들의 그러한 행위를 돕거나 선동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교정의 출입통제** - 학생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학교에 도착한 시간부터 교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학교시간 중에 승인을 받은 교외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유효한 교외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학교를 방문할 때에는 양측 학교장의 사전 승락서를 받아야 한다.

**\* 위험한 행동** - 지각이 있는 사람이 보기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그러한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 반항** - 학생은 교직원의 합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재산파괴** - 어떤 식으로든지 학교재산이나 교직원, 계약자 혹은 학생의 재산에 모양을 흉하게 하거나 손상시키거나 손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한다.

워싱턴주 개정법 RCW 28A.635.060 에 따라 학생과 학생의 부모 / 보호자는 교육구측 재산이나 교직원, 계약자 혹은 학생의 재산에 입힌 모든 손해에 대하여 교육구측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 학생의 성적표, 졸업장 또는 성적증명서는 변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그 발행을 보류할 수도 있다.

**\* 파괴적인 행위** - 학교구내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행위나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고의적인 행위는 금지된다.

**물의를 일으키는 의복착용과 외모** - 의복착용과 외모는 건강이나 안전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 마약, 알코올 및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약물** - 교육구의 시책에 따라 학생은 마약이나 알코올,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약물,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 및 부모나 보호자가 서면으로 승낙하지 않은 의약품을 취하거나 마약용 소도구나 그런 취지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 판매, 배포해서는 안된다. 교장이나 학교 간호사로부터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학생은 학교구내에서 처방이 있거나 없는 약 또는 치료제를 소지해서는 아니된다. \*\* 마약, 알코올 혹은 심리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 환각제를 판매나 배포하는 일은 제 9 조 B, 에 정의된 것처럼 무관용에 해당되는 부당 행위이다.

**\*\* 폭발물** - 화이어크래커나 총탄 및 파이프폭탄과 같은 힘과 격렬함을 동반하여 폭발하거나 폭발하게 되어있는 어떤 것도 그 소유와 사용은 금지된다.

**\* 강탈 / 공갈 / 강압** -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획득하거나 완력이나 완력의 위협으로 타인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허위비난 / 명예훼손** - 학생은 그릇된 행위라고 사실이 아닌 비난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진술을 해서도 아니된다.

**\* 허위경보 / 소방장치** - 경보장치를 잘못 맞추어 놓거나 소화기를 방출하거나 흠치는 행위 또는 경보장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 격투** - 신체접촉이 포함된 다툼은 금지된다.

**\* 위조** - 타인의 이름을 문서에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시간, 날짜, 점수, 주소 및 기타 자료를 변조하는 것은 금한다.

**도박** - 한 종목 ( 게임 ) 의 승산 여부를 놓고 값어치가 나가는 어떤 것에 모험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등.

**\* 갱활동** - 교육구의 시책 ( 정책 3225 ) 에 따라 학생은 ( a ) 교직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품행 , 의상 , 활동 , 행동 및 기타 상징물이 갱과 관련이 있고 학교 환경과 그 활동 또는 교육목적에 혼란을 일으키며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 b ) 교직원으로 하여금 학생자신과 다른 학생 , 교직원 및 타인에게 신체상의 안전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믿게 하고 ( c ) 교직원으로 하여금 부당한 압력 , 품행 , 위협 , 불경스러운 몸짓 또는 폭력의 위협으로 학생 , 교직원 또는 타인의 안녕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믿게 하며 ( d ) 여하한 학교나 개인 재산 혹은 개인이 소지함으로써 문서 , 표식 , 드로잉 , 페인팅 , 도안 , 기장에 의해 갱 멤버나 갱동맹을 암시한다고 교직원이 믿게 하는 의복착용 , 의상 , 활동 , 행동 , 품행이나 그런 차림새를 나타내거나 반영하거나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 ( 교육구에서는 매년 학생과 부모 / 보호자에게 어떠한 의복이 갱과 관련된 의복으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하여 알려드립니다 . )

**\* 악의가 있는 괴롭힘** - 인종 , 종교 , 출신국 , 성별 , 성지향 , 육체나 정신 지각적 무능 및 조건 등과 관련 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며 사람이나 사람의 재산에 해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처하게 하거나 교육하는 환경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된다 . ( 제 14 조 참조 )

**\* 성적 괴롭힘 ( 성희롱 )** - 환영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성적인 진행 , 성적호감에 대한 요구 , 성에 대한 언급 , 만화 , 풍자 및 성 본래의 특성을 표현하는 말이나 육체적 행동은 금지된다 . ( 제 14 조 참조 )

**\* 괴롭히고 못살게 굴기** - 학생은 타인을 조롱이나 짓궂은 장난 및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들을 포함하여 ,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락시키거나 망신을 주는 또는 그러한 의향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것을 꾀하거나 다른 사람이 참여하도록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

**불경스러운 애정표시** - 사회규범에 위반되는 공공연한 애정표시 또는 성지향적 행위는 금지된다 .

**불경스런 언어** - 저속하고 외설적이며 불경스런 언어는 구어든지 문자든지 혹은 몸짓이든지 불문곡절하고 금지된다 .

**\* 위협** - 완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학교직원이나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 제 14 조 참조 )

**레이저 포인터** - 교사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 , 학생들의 레이저 포인터 휴대나 사용은 금지된다 .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공공구역에 쓰레기를 집어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모아 두거나 버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

**배회** - 화장실이나 주차장 및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배회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전자정보 체제의 남용** - 학생은 전자우편 , 통신망 , 인터넷과 같은 전자정보 체제를 사용할 경우 교육구시책에서 허용할 수 있는 사용 안내지침에 따라야 한다 . ( 제 7 조 참조 )

**교내에서의 자동차 운전** - 교내에서 학생 , 방문객 , 교직원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규제해야 한다 . ( 교육구 정책 3241 )

**신분증명 의무** - 누구든지 요청을 받으면 교직원에게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

**\* 강도** -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타인의 재산을 강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학교에서 물품팔기** - 허가를 받은 단체만이 학교 재산이나 학교 행사 중 판매할 수 있다 .

**학생의 표현** - 수업진행에 사실상 혼란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권리를 저촉하는 저속적이고 추잡하며 외설적이거나 단순히 불쾌한 표현 양식을 학생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4. 활동 자문역을 맡아하는 분과 코치는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개발시키는데 있어 부모를 동반자로 포함시켜야 한다 .
5. 모든 활동 및 / 또는 운동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학생과 부모에게 명확히 규정하고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 .

활동 / 운동프로그램 각각 연례평가를 해야 하며 학교의 폭넓은 목적을 위해 그들이 제공한 후원 수준에 중점을 두게된다 .

**학생** - 학생의 참여는 특권이며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다 . 학생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며, 건강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자신들의 행위와 건강에 관련한 결정은 학생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데 나타내는 능력과 학교대항 행사, 경쟁에서의 능력 발휘에 영향을 미친다 . 학교대항 경쟁, 행사 등에 학생이 거주하는 커뮤니티, 학교 그리고 본인 자신을 대표하려면 학생은 반드시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마약, 알코홀 및 / 또는 모든 담배제품의 사용을 삼가해야 한다 .

1. **활동 / 운동경기 프로그램의 목표는 스포츠맨 정신을 가르치는 것 외, 팀워크, 자기편의 동료, 경기 임원, 상대방 팀의 멤버와 팬을 존중하는 것이다 .**

용인된 학생의 학칙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에 더해 과외활동 및 운동경기 참가에 관해 부과되는 벌칙은 다음과 같다 :

**위반 및 벌칙 - 모든 학칙위반행위에는 장기정학 혹은 제적처분을 받거나 유예 중인 장기정학 혹은 제적처분을 받는다.**

- A. **1 차 위반** - 학생은 즉시 학교대항 경기 혹은 행사에 대해 자격이 없어지고 위반한 날로부터 달력일자로 일년간 모든 과외활동이나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가 금지된다 .
- B. **2 차 위반**- 학생은 모든 과외활동 / 스포츠 프로그램에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

해당 벌칙을 가하는 교직원은 학생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한 배경에 근거해 벌칙을 가감할 수 있다 .

2. 해당 운동 / 활동 시즌 \* 동안 학생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것들을 불법적으로 사용, 휴대, 판매, 배포 하거나 영향 하에 있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

- 알코홀
- 근육증강제 ( 스테로이드 )
- 불법마약
- 담배제품

\* “운동 경기 / 활동 시즌” 이란 8 월달 첫번째 행사 활동일부터 각 학교의 해당 학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짜까지로 정의된다 .

헤드럴웨이 교육구 학생의 권리와 책임 소책자에 설명된 모든 교정조치와 징계처분에 더해 알코홀, 근육증강제 ( 스테로이드 ), 마약에 대한 학칙을 위반하는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가 적용된다 :

## 알코올, 근육증강제 (스테로이드), 불법마약에 대한 위반 및 벌칙

학부모 / 법적보호자는 이 문제에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며, 법집행 당국에 연락된다.

### A. 알코올, 근육증강제 (스테로이드), 불법마약에 대한 1 차 위반 :

1. 판매 및 배포 - 학교 내, 학교와 인접한 사유지 또는 학교 기능을 하는 곳에서 발생한 판매 및 배포에 대하여 해당 학생은 교육구로부터 제적되며, 즉각적으로 제적기간동안 학교대항 경기 참여자격이 없다.
2. 소지 및 사용 - 학생은 즉시 학업일자로 육십 (60) 일간 학교대항 경기 참여 자격이 없다.
3. 상기에 언급한 물질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즉시 탈퇴하지 않을 경우 - 학생은 최소 오 (5) 일 부터 최대 삼십 (30) 일까지 참가자격이 정지된다.

### B. 알코올, 근육증강제 (스테로이드), 불법마약에 대한 2 차 위반 :

위의 1, 2, 3 번을 두 번째로 위반할 경우, 학생은 2 차 위반한 날로부터 1 년간 모든 교육구의 활동 / 경기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자격을 즉시 박탈당한다.

### C. 알코올, 근육증강제 (스테로이드), 불법마약에 대한 3 차 위반 :

위의 1, 2, 3 번을 세 번째로 위반할 경우 학생은 어떠한 교육구의 학교대항 활동 / 경기 프로그램에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 담배제품의 소지나 사용에 대한 위반 및 벌칙

학부모 / 법적보호자는 반드시 이 문제에 개입되어야 한다.

### A. 담배제품 - 1 차 위반

학생은 여하한 교육구의 학교대항 활동 / 운동경기 프로그램으로부터 십 (10) 일간 정지처분을 받는다.

학생이 흡연 / 담배제품 금연 클래스에 등록하여 이를 완수하여야만 현학년에 대한 참여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B. 담배제품 - 2 차 위반

학생은 여하한 교육구 학교대항 활동 / 운동경기 프로그램으로부터 이십 (20) 일간 정지 처분을 받는다. 학생은 반드시 흡연 / 담배제품 금연 클래스에 등록하여 이를 완수하는 것 외, 위험 평가에 참여하고 권장 사항에 준수할 것으로 동의하면 현학년에 대한 참여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C. 담배제품 - 3 차 위반

학생은 여하한 교육구 학교대항 활동 / 경기 프로그램으로부터 구십 (90) 일간 정지 처분을 받는다. 학생은 반드시 흡연 / 담배제품 금연 클래스에 등록하여 이를 완수하는 것 외, 위험 평가에 참가하고 권장 사항에 준수할 것으로 동의하면 현학년에 대한 참여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3. 학교대항 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이 되려면 학생은 다음과 같은 학구(學究)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적어도 4 학점은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학생이 등록한 학기의 각 클래스에서 “C-” 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육(6) 주 학습과정 성적표에서 각 클래스마다 “C-” 학점 이상 또는 평점 2.6 을 받아야 한다.

학교측은 육(6) 주, 십이(12) 주, 십팔(18) 주 말(末)에 각 참여 학생의 성적을 검토해야 한다. 육(6) 주 학습과정 성적표에서 학점 평가 기간동안 평점 2.6 이상을 유지하고 각 클래스에 “F” 학점이 없는 한, 학생의 운동 / 활동에 대한 참가자격은 유지된다.

학생과 학부모 / 보호자는 담당 교사들과 같이 학생의 자격 요건 부합을 위해 학점 올리기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 교사가 학생의 학점이 해당 표준에 부합하다고 입증하는 대로 학생은 참가 자격을 다시 얻게 된다. 자격 미달 학생은 연습은 계속할 수 있지만 자격이 미달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학교대항 활동이나 행사 또는 경시대회에도 참여할 수 없다.

활동 / 운동에 참가하는 학생은 “개별 교육계획 (IEP)” 의 일환으로 문서화되어 있으며 “개별화된 교육계획 (IEP)” 에 이미 확립이 된 조항에 의해 처리된다.

중학교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특정 건물이나 필요한 프로그램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들 요건들을 수정할 수도 있다.

4. 불법마약, 알코올, 근육증강제 (스테로이드), 담배와 관계된 위반행위, 성적미달, 긴급제적, 제적 및 장기정학으로 인한 참가자격미달 등을 처리하는 상소위원회가 있다. 상소위원회는 학생의 학교 체육부장, 활동담당부장 또는 학교 행정관 \* 중 1 명, 타교 행정관 1 명, 타교 코치 또는 학교 체육부장 중 1 명, 체육담당지도교사 또는 교육구 행정관 중 1 명, 학생이 선택한 대변인 1 명 등, 총 5 명으로 구성된다. \*\*

(\* 학교 / 체육생 규율을 제정한 행정관의 경우는 참여 불가)

(\*\* 임의선택)

타교의 학교장, 코치, 활동담당지도교사 및 교육구 행정관은 부교육감이나 그의 지명인이 선정한다.

위의 제 4 항에 지명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항소는 이 정책에 따라 운동경기 혹은 학교활동 참가자격 상실 통지일로부터 삼(3) 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교육감에게 해야 하며, 부교육감은 항소요청 접수일로부터 수업일 오(5) 일 이내에 항소위원회를 선출해 소집해야 한다.

상소위원회에 이의제기 후 해당 학생, 학부모 혹은 보호자는 수업일자로 이틀(2) 이전까지 통보하는 조건으로, 교육구의 교육감이나 그 지명인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제기를 표현하는 권리를 갖는다. 교육감이나 그 지명인에게 이의제기 후 해당 학생, 학부모 혹은 보호자는 수업일자로 차기 이사회 정규회의가 열리기 이틀(2) 이전까지 통보하는 조건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이사회에 이의제기를 할 권리가 있다. 상소과정이 완결될 때까지 활동 / 운동에 대한 참가정지조치의 효력은 지속된다.

5. 모든 참가 학생은 위의 제 3 항이 워싱턴주 학교대항 활동 연합회 (WIAA) 의 학구(學究) 요건에 대체되는 것 예외는 워싱턴주 학교대항 활동 연합회의 자격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며, 해당 학생은 학교대항 대회에 참여를 위해 자격을 유실하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에 한 번 전학할 수 있다. (전학으로 인한 자격상실 상소 과정은 교육구 절차 3131P 참조.)
6. WIAA 자격요건에 관한 사본은 실시이전에 경기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나온 각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7. 이 규정에 첨가하여 당 교육구의 모든 규칙은 합당한 곳에 적용된다.

## 제 4 조 - 담배, 알코올, 불법마약,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 환각제 ( 정책 3309)

위원회는 학생들이 담배, 알코올, 마약 및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믿고 있다. 학생이 학교구내에서나 그 인접구역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담배, 알코올, 마약 및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약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금지사항을 위반한 학생은 정책의 규정대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항은 유치원에서 12학년 까지 반복된다.** 일반적으로 5 학년에서 12학년 학생에게는 더 엄중한 교정조치가 취해진다. 전 직원은 이 정책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체육과 / 또는 활동에 학생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적인 요건들은 학생 체육 / 활동규정 ( 제 13 조 참조 ) 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 체육 및 활동규정 위반은 7 학년에서 12 학년까지 누증적으로 다루어진다.

### 담배류

담배제품 소유나 사용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합당한 원인이 있으면 그 학생은 훈육조치를 받게 된다. 합당한 원인이란 어떤 특별 학생이 학교구역이나 그 인접지역 또는 학교주관의 활동행사에서 담배제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었음을 상술하거나 지적할 수 있는 관측이 가능한 세부적 사실들을 의미한다. 그러한 사실들은 학생의 호흡이나 인체에서 담배제품의 냄새나 시각적으로 보이는 증거가 포함되나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유치원에서 12 학년까지

#### 담배제품의 사용 또는 소지에 대한 제 1 차 위반

- 학생은 5 일간 학교로부터 정학처분을 받는다.
- 부모와 회의를 해야한다.
- 만일 학생이 교육구가 승인한 금연클래스에 등록하여 완수하면 정학은 수정될 수도 있다. ( 등록은 위반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야한다.)
- 만일 학생이 헤드럴웨이 교육구가 승인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마약 알코올 기관의 사정평가에 참여하며 그 사정평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사실을 교육구측이 확보하면 정학은 수정될 수도 있다. ( 사정평가는 위반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학생이 사정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이나 금연클래스를 완결하지 못하면 그 당시의 정학 잔여기간은 효력 발생하게 된다.

#### 담배제품의 사용 또는 소지에 대한 제 2 차 위반

다음은 제외하고는 일차위반과 같다 :

- 학생은 10 일간 정학처분이 내려지며
- 만일 학생이 사정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면 정학이 최저 5 일까지 수정될 수도 있다.

### 담배제품의 사용 또는 소지에 대한 제 3 차 위반

다음은 제외하고는 일차위반과 같다 :

- 유치원에서 4 학년까지의 학생들은 같은 학기중에 이전의 두번과 같이 발생한 반복된 위반이 아니면 10 일간 정학에 처해진다 .
- 5 학년에서 12 학년까지의 학생들은 학교나 학교의 모든 활동으로부터 장기정학에 처해진다 .
- 만일 학생이 사정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면 정학이 최저 10 일까지 수정될 수 있다 .

### 알코올 , 불법마약 ,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 환각제

알코올 , 불법마약 ,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 환각제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어떤 합당한 원인이 있으면 그 학생은 훈육조치를 받게 된다 . 합당한 원인이란 어떤 학생이 학교구역이나 그 인접지역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활동 행사에서 알코올 , 불법마약 , 마약장비 혹은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 환각제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했다는 것을 기술 또는 지적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세부적 사실들을 의미한다 .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했을 경우 더 가혹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동화작용성 스테로이드 제재를 휴대해서는 안된다 .

어떤 학생도 다른 학생에게 종류를 불문하고 의약품을 조재하거나 , 투약하거나 , 유통시켜서는 안된다 .

### **유치원에서 4 학년까지**

#### 알코올 , 마약 및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약물사용이나 소유에 대한 1 차 위반 ( 유치원 -4 학년 )

- 학생은 5 일간 정학처분을 받게 된다 .
- 부모와의 회의를 해야한다 .
- 법 집행기관에 연락이 된다 .
- 만일 학생이 헤드럴웨이 교육구가 승인한 , 자격을 갖춘 마약 / 알코올 기관의 사정평가에 참여하면 정학이 수정될 수도 있다 . 교육구는 학생이 사정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 만일 학생이 사정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완수하지 못하면 정학의 잔여기간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 알코올 , 마약 및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약물사용이나 소유에 대한 2 차 위반 ( 유치원 -4 학년 )

다음은 제외하고는 1 차 위반 때와 동일하다 :

- 학생은 최저 10 일간의 장기정학에 처해진다 .( 또는 일차위반과 동일한 학기 내에서 위반을 반복하면 제적됨 ) .
- 아동보호소 (C.P.S.) 에 연락된다 .

### 알코홀, 마약 및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약물사용이나 소유에 대한 3 차 위반 (유치원 -4 학년)

다음은 제외하고는 1 차 위반했을 때와 동일하다 :

- 학생은 워싱턴주 행정법 (WAC 392-400-275) 에 의거하여 당 교육구로부터 제적을 당하게 된다 .
- 평가에 참여한다고 해서 제적이 수정되는 조항은 없다 .

### 판매 또는 배포에 대한 1 차 위반 (유치원 -4 학년):

- 학생은 10 일간 정학처분을 받는다 .
- 부모와 회의를 해야한다 .
- 법 집행기관에 연락된다 .
- 만일 학생이 헤드럴웨이 교육구가 승인한 기관의 사정평가에 참여하면 정학이 수정될 수도 있다. 교육구는 학생이 사정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 만일 학생이 사정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완수하지 못하면 정학의 잔여기간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만일 부모나 보호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소에 연락을 하게된다 .

### 판매 또는 배포에 대한 2 차 위반 (유치원 -4 학년)

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차위반과 동일하다 :

- 학생은 교육구로부터 제적처분을 받게 된다 .
- 아동보호소 (C.P.S.) 에 연락이 가게 된다 .
- 만일 학생이 헤드럴웨이 교육구가 승인한 기관의 사정평가에 참여하면 제적이 수정될 수도 있다. 만일 학생이 사정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완수하지 못하면 제적의 잔여기간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 판매 또는 배포에 대한 3 차 위반 (유치원 -4 학년)

- 학생은 워싱턴주 행정법 (WAC 392-400-275) 에 의거하여 당 교육구로부터 제적을 당하게 된다 .
- 학생은 당 교육구로부터 제적되기 전에 긴급제적을 당하게 된다 .
- 사정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제적이 수정되는 조항이 없다 .

## **5 학년에서 12 학년까지**

### 알코홀, 마약 및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약물사용이나 소유에 대한 1 차 위반 (5 학년 -12 학년)

- 학생은 20 일간 정학처분을 받게 된다 .
- 부모와 회의를 해야한다 .
- 법 집행기관에 연락된다 .
- 만일 학생이 헤드럴웨이 교육구가 승인한 기관의 사정평가에 참여하면 정학이 수정될 수도 있다. 교육구는 학생이 사정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 만일 학생이 사정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완수하지 못하면 정학의 잔여 기간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만일 부모나 보호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보호소에 연락된다 .



학교와 교육구는 압수된 기기를 포함해 학교에 가져온 어떠한 전자기기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중학교

모든 학생들은 어느 교육구 소유지에서든 항상 전자 또는 통신기기를 가능한 한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 하지만 안전 및 가족간의 연락이 필요한 차원에서 학부모가 승인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 가능한 한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확립 및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부지 내에서나 학교 후원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학생은 개인용 통신 / 전자기기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다 . 여기에는 무선호출기 , 삐삐 , MP3 플레이어 ,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다 . 이러한 기기의 소지 및 사용이 학문적 성실성을 위협하거나 학습환경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통신기기 또는 기타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학생은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 수업시간 중에는 모든 통신 / 전자기기를 눈에 띄는 곳에 두거나 작동하지 않는다 . 급박한 신체적 위험과 관련된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학교 행정관이 학생에게 달리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 / 전자기기는 정규 수업시간 전후에만 꺼내 놓거나 작동할 수 있다 .
- 이 정책을 위반하는 학생은 해당 기기의 압수를 포함해 학교 소유지 내에서의 기기 소지 자격을 박탈당하는 단계적 징계조치까지 받게 된다 . 압수된 기기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 / 보호자를 통해서만 되찾을 수 있다 . 모든 경우에 있어 첫 번째 단계는 기기를 치우거나 작동을 중지하라는 Federal Way( 웨드럴웨이 ) 공립학교 직원의 구두 경고에서 시작된다 .
- 통신/전자기기의 사용이 수업 및/또는 교육상 도움이 되는 경우 교사는 교실에서의 통신/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교사는 학기 시작에 앞서 허용되는 기기사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서면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 또한 특정 교사의 수업시간에 통신 / 전자기기의 적절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모든 학생과 학부모 /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교사는 세부내용을 교과 요강에 포함한다 .
- 학교에 가져온 통신 / 전자기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있다 . 교육구는 압수된 경우에도 학교 소유지 내에 가져온 이러한 기기의 분실 , 도난 또는 파손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

###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은 어느 교육구 부지에서든 항상 전자 또는 통신기기를 가능한 한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 하지만 안전 및 가족간의 연락 필요 차원에서 학부모가 승인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 가능한 한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확립 및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소유지 내에서나 학교 후원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학생은 개인 통신 / 전자기기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다 .



하고 있는 활동에 적합한 것이 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의복은 각 학교나 부차적 프로그램의 학생 복장 규정으로서 금지하고 있다 :

- 수업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예상되는 학교재산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느끼게 하는 의복.
- 외설적이거나 성과 관련되는 언어, 그림, 메시지 또는 풍자가 표시된 의복.
- 마약이나 알코홀과 관련된 언어, 그림, 메시지 또는 풍자가 표시된 의복.
- 파자마, 슬리퍼, 홀터상의(팔과 등이 드러나는 여성용 상의) 또는 복부가 노출될 만큼의 짧은 셔츠, 일반적으로 골반에 걸쳐입는 바지로 속팬티가 노출될 만큼 내려 입는 바지 또는 손가락 폭 길이보다 짧은 반바지나 스커트.
- 갱단원임을 상징하거나 갱과 관련된 언어, 상징물, 메시지 또는 그림이 표시된 의복.

학교복장 규정은 학생들이 교복 / 또는 증명뺏지를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할 수도 있다.

모든 교직원은 학교의 학생교복 규정이 일관되며 공평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다. 의복착용에 있어서 학교나 부차적 프로그램의 복장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적절한 교정을 하도록 요구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훈육조치에 해당되며 부모에게 통고를 하게된다.

교육장은 학교에서나 과외활동을 하는 동안에 적합한 학생복장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절차를 세워야 한다.

## 제 7 조 전자메일, 인터넷 2022.2P)

## ( 정책 2022 및 절차

헤드럴웨이 교육구의 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들은 특정한 과학 기술의 습득, 이용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 본 교육구의 교육적 목표에 맞지 않는 자료와 마주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교육구의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고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구 당국이 우선 순위를 부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교육구내에서 과학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은 연방 및 주법, 네트워크 공급자의 지침, 나아가 교육구가 수용할 수 있는 사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교육구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누구라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수 있으며, 징계 및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정보나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이 웹에 공개될 경우에는 언제나 학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학교장 또는 피지명자가 웹에 학생의 과제물이나 정보를 게시할 경우에 관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다.

### 이메일, 네트워크, 인터넷 등 학생을 위한 전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 지침

다음의 규정 및 절차는 본 교육구의 전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 지침이다. 각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 접속에 대한 권리를 갖기 전에 이들 규정에 따른 것을 문서로 동의해야 한다.

##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은 교육 및 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본 교육구의 사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본 교육구는 시스템의 사용 및 접속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미국 헌법 수정 제 1 조를 위배하지 않는다.

시스템 사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법 및 연방법, 네트워크 프로바이더 정책 및 라이선스, 교육구 정책에 합당해야 한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상업적인 유인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자선 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장이나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스템은 공공 시설로서 정치 후보자나 의안에 대한 지지나 반대, 투표수 측정, 또는 인가되지 않은 로비 활동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시스템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통신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메일을 배포하는 경우, 전달에 대해 보장될 수 없으며, 시스템에서 삭제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시스템 구성 요소를 훼손하거나, 변경, 남용해서는 안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용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짓을 시행하거나 시스템 상에 무단 접속을 시도하거나 네트워크상의 구성요소를 손상시키는 일은 금지된다.

시스템 상으로 전송하거나 출판하는 내용 및 그 적합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악의적인 메일이나, 괴롭힘, 차별적인 내용, 기타 반사회적인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음란물이나 포르노그래프에 접속,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일에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 또한 금지하고 있다.

메일 리스트나 게시판, 상용 온라인 서비스, 기타 정보 서비스 등에 대해 학생이 가입하는 것은 감독 교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 파일이나 통신문은 사적인 내용이나 대외비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교육구는 어떤 이유로든 이메일이나 기타 정보를 모니터하고 접속하거나 사용,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보안

시스템 계정은 인가된 목적을 위해 인가 받은 계정의 소유자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확인 번호나 암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파일이나 세션을 열어 놓은 채 자리를 비워서는 안된다. 계정 소유자는 자신의 계정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속한 파일이나 기타 데이터, 암호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려 하거나 복제 또는 변경하는 일과, 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하는 일 등은 금지되어 있다. 암호화 (보안 정보의 코딩 과정)는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사전에 교육구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보안 목적상, 교육구는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시스템 옵션을 결정하게 된다.

## 개인적인 보안

시스템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사적인 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학생들은 사전에 교사나 다른 교육구 직원, 부모 / 보호자 등의 승인 없이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학생들은 또한, 교육구나 부모의 승인 없이는 시스템 상으로 접촉했던 사람들과 만나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이 위험하거나 불법적이며, 부적절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불안하게 하는 어떠한 정보를 접하는 경우, 교사나 다른 교육구 직원, 부모 /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인 장비 사용은 반드시 교육구 정책 및 지침에 따라야 한다. 교육구 소속이 아닌 컴퓨터는 교육구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정보기술과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컴퓨터에는 반드시 교육구의 수준에 준수하는 유효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구는 해당 장비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저작권

학생의 작업이나 정보는 웹에 출판할 준비가 되는 즉시 그리고 매번 웹 출판 전에 해당 내용을 복사하여 부모 / 보호자에게 전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메일 계정을 가지려는 학생들은 이에 대한 부모 / 보호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구 컴퓨터에 대한 저작권 적용 소프트웨어나 기타 제품의 비인가 설치 및 사용, 저장, 배포는 금지되고 있다.

### 필터링 및 감독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컴퓨터에는 필터링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설치 사용된다. 필터링은 외설물, 아동 포르노물,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영상이나 문자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거한다.

교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교내 미성년자의 인터넷 사용을 감독하며, 미성년자가 옹지 못한 인터넷 자료에 접속치 않도록 합당한 대책을 한다.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 내용이 합당한지는 계속적으로 확인되나, 만약 학생이 뜻하지 않게 부당한 사이트에 접속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구 직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일반 사용

학생의 네트워크 사용 승인서 (Acceptable Use for Student)에 서명하여 본 승인서를 제출치 않고는 아무도 교육구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다. 또한, 18 세 미만의 학생은 반드시 학부모 혹은 법적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사의 감독 하에 혹은 교육구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동안 감독 하의 네트워크 사용을 막으려는 의도는 이들 규정에는 없다.

본 교육구는 해당 시스템의 특정 용도가 본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지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교육구는 지침의 위배와 관련된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시스템 접속 권한을 박탈하고 적절한 교정적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최고 학생의 퇴학을 포함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구 관리자가 법의 위배 사항을 의심하게 될 경우, 교육구는 적절한 사법 기관 (예, 지역 경찰서, 주정부 감사, 공공 공개 위원회, 공중 지도처장 등)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본 교육구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인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교육구는 태만이나 실수, 잘못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지연이나 전송 장애, 전송 불량,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포함하여 어떠한 손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사용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있다.

교육구는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의 정확성이나 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인한다.

## 제 8 조 버스통학 행위

(절차 8123P)

학생들이 학교버스 통학하는데 허용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학년 초마다 학생들에게 버스규칙에 관한 사본을 발급할 것이다.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는 이들 규칙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웨드럴웨이 교육구가 운영하는 버스에서 안전과 버스의 정규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불신행위로 간주한다.

다음은 불신행위를 취급하는 일반적인 안내지침이다 :

행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버스 운전자는 학생이 져야 하는 책임을 판명하게 될 것이다 .

운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면 학생에게 불신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발급하게 된다 . 운전자는 위반한 규칙을 열거하게 된다 .

학생이 버스에 재 탑승하도록 허용되기 전에 부모 / 보호자와 학교장은 보고서 사본 3부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한다.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

학교장은 훈육조치가 더 필요한지의 여부 ;

학생에게 언제 다시 버스승차를 허용할지에 대한 여부 .

학생이 불신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2 번째 받게 되면 학교행정관은 최고 (5) 일까지 학생의 버스승차 특전을 거부할 수 있다 . 부모나 보호자는 학교 행정관으로부터 서면으로된 거부통지를 받게 된다 . 학교행정관에게 상고회담을 요구할 수 있다 .

학생이 3 번째로 불신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

-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만일 학교행정관의 결정이 적절하다면 최고(10)일까지 버스승차 특전이 거부된다 .
- 중등학생인 경우 , 만일 학교행정관의 결정이 적절하다면 최고 (90) 일까지 버스승차 특전이 거부된다 .
- 승차특전이 취소 되면 부모나 보호자는 학교행정관을 만나야 하며 서면으로 통보를 받는다 .
- 만일 학생이 방면되지 않았다면 승전특전이 정지된지 (5)일 이후 학생 , 부모 및 보호자 , 버스운전사 , 학교행정관이 회담을 한 후 학생이 성문화된 버스 규칙을 준수하며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 동안 당 학생의 존재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만 승차특전이 복권될 수 있다 .

만일 학생 또는 부모 / 보호자가 오 (5) 일이 넘는 통학버스 승차권 정지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교육감의 지명인에게 연락하여 이의를 처리할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다 .

긴급조치 : 학생이 버스를 계속 타고 있게 될 경우 학생의 행위자체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운전기사가 판단하면 그러한 학생은 즉각적으로 도중하차 시킨다 . 학생은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소에서 도중하차를 당하게 되며 버스 운전사는 불신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그 자리에서 발급하게 된다 .

## 버스 규칙

1. 운전자는 항상 버스와 승객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승객들은 운전사의 말을 즉시 준수해야 한다.
2. 운전사가 학생의 이름을 물으면 학생들은 쾌히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바로 말해야 한다.
3. 버스 승차 특권을 남용하지 않는 한,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조용하게 대화하는 것은 허용된다.
4.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며 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일어서서는 안된다.
5. 어떤 학생은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항상 그 자리에 앉도록 특정한 좌석을 배정 받을 수도 있다.
6. 학생은 누구든지 버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이나 라이터를 켤 수 없으며 어떠한 종류의 화염 및 점화장치 사용도 금지한다.
7. 작대기, 부서질 수 있는 용기, 어떠한 종류의 화기류, 끈이나 옷에 달려있는 핀 종류와 같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을 갖고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
8. 서비스 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버스 탑승이 허용되지 않는다.
9. 학생들은 버스 승차 중에 또는 버스 근처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밀거나 밀어 제치거나 치는 행동 또는 기타 안전치 못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10. 학생들은 버스가 움직이든 정지해 있든 창밖으로 머리, 손, 팔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
11. 버스를 향해서나 버스 창 안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12. 학생들은 저속하고 음란한 언어 및/또는 몸짓을 해서는 안 된다.
13.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버스승차를 허락 받기 전에 학교 당국이 발급한 적정 “버스승차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 A. 학생의 정규 버스 정거장이 아닌 장소에서 버스를 타고 내릴 경우.
  - B. 학생 자신에게 지정된 버스가 아닌 버스를 탈 경우.
  - C. 행사용 버스나 늦게 서비스 버스를 탈 경우.
14. 예를 들어 현장 견학과 같이 특별히 허락되고 감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버스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5. 학생들은 어느 때이든 운전석에 앉아서는 아니되며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운전사 바로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어서도 안 된다.
16. 실지 비상사태시 학생들은 긴급탈출 연습 때 제정된 것처럼 반드시 긴급탈출절차를 준수해야만 한다.
17. 부모 / 보호자는 학생의 불량행위로 인해 초래된 학교버스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웨드웰웨이 교육구로 한다.
18. 학생들은 버스 도착 예정시간보다 늦어도 5분에서 10분 전에 버스정거장에 도착해야 한다. 버스는 학교 방과 시간 5~7분 후에 모든 학교를 즉시 출발한다. 안전을 위해 일단 버스문이 닫히면 운전사는 버스 정거장에 늦게 오는 학생을 위해 정지하지 않으며 학생은 버스를 뒤따라 \_지 말아야 한다.
19.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은 도로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은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해야 하며, 버스가 다가오면 운전사의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0.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길을 건너야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운전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언제나 버스 정지 신호등이 깜빡거리거나 정지 표지판이 내려와 있을 때 버스 앞쪽에서 길을 건너야 한다.
21.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정중한 행동이 요구된다.
  - A. 요청시 즉시 운전사의 지시에 순응한다.
  - B. 좌석에 앉아 있다.
  - C.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한다.
  - D. 자신의 손은 제자리에 둔다.
  - E. 음성을 낮춘다.
  - F. 버스 통로에는 아무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
  - G. 버스를 더럽히지 않는다.

## 제 9 조 학생의 부정행위에 따른 결과

( 정책 3300P )

### A. 총론

학교와 교육구의 규칙을 위반한 학생들은 훈육, 정학 또는 제적조치 처분을 당하게 된다.

어떤 불실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관이 별첨명세를 정할 수도 있으나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시비곡절에 따라 각 사건의 본질과 상황이 따로 검토될 것이며 훈육자와 청문회 담당관들에게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수의 학교정책, 규칙, 규정 등을 자주 위반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한번 위반한 학생 대비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곤 한다. 위반 행위가 누적되면 정학이나 제적 등의 교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한 법률위반과 관련된 부정행위의 경우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 B. 무관용 정책

헤드럴웨이 교육구는 불실행위 그 본질상 학생의 존재가 즉시 계속해서 본인과 다른 학생 및 학교 직원에게 위협을 줄 수 있고 수업진행에 충분히 즉각적이며 계속적으로 방해할 위협을 준다고 믿게되면 이러한 불실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정책 (zero-tolerance policy) 을 갖고 있다. 이 결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불실행위에 관련된 학생들은 위 제 2 조에서 규정한대로 긴급 제적조치를 처하게 된다.

1. 방화
2. 폭발물
3. 마약, 알코올 혹은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 환각제 판매 혹은 배포
4. 무기 ( 무기류로 보이는 모든 모조품을 포함하여, 무기로 사용할 목적의 물건, 무기로 간주될 수 있는 물건 ). 때에 관계 없이 학교 소유의 부지에서 제 2 조에 무기의 정의되어 있는 나이프, 무기로 간주될 수 있는 나이프, 혹은 무기처럼 나이프를 내 보이는 것은 이 범주에 포함된다.
5. 다른 사람에게 행동으로써나 말로써 겁을 주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고 위협 ( “ 암살 ( 공격 ) 대상자 명단 ” 포함 ) 하는 행위 . 이러한 부류의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결정할 때 학교측의 교직원들은 이러한 행위의 의도와 경위를 검토해야 한다 .

전술한 결정과 불실행위의 목록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며 합당한 경우에 다른 불실행위도 역시 긴급제적조치가 될 수 있다는 행정관의 결정을 미리 배제하지 못한다.

## 제 10 조 교정조치 부과 절차

( 정책 3300P )

### A. 일반 적용 조항

1. 교사, 학교행정관, 학교, 버스운전사와 기타 지정된 학교직원들은 (1) 본 책자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어느 학생에 대하여 훈육조치를 취할 수 있는 (2) 교실, 과목 또는 여기에 규정된 활동으로부터 학생을 임시적으로 제적할 수 있는, (3) 어느 학생을 정학 또는 제적시키기 위하여 합당한 학교 당국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 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만 학교행정관, 교육감 또는 이런 분들의 지명인만이 정학이나 제적을 부과할 수 있다.
2. 신체가 부자유한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생행동에 관한 규칙과 교정조치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제시된 교정조치가 실행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면 법률이 요구하는대로 특별절차를 밟게 된다. ( “교육구정책 신체 부자유자 교육법에 의거한 적법절차” 를 참조하십시오.)
3. 의도적으로 유체적 고통을 주는, 또는 의도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어떤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정의된 체벌은 주법률과 위원회 시책에 의하여 금지한다. 워싱턴주 행정법 392-400-235(3) 에 예외 규정이 있다.
4. 본 책자의 다른 어떤 규정이 이와 다르다고 해도 어느 것이 먼저 행하여 지느냐에 따라 자격이 있는 직원은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학생도 학교 훈육기준의 위반으로 그날의 수업전체나 일부 또는 그 다음 이일간 수업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또는 교장이나 그 지명인과 의논을 하고 난 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을 배제시키기 이전에 교사는 반드시 한번 이상 다른식의 교정조치를 시도해야 한다. 배제된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날 또는 그 다음 이틀간의 전체 혹은 일부 수업시간 또는 교사가 교장이나 그 지명인과 협의하고 난 후까지 수업시간에 들어 올 수 없다.

### B. 훈육에 적용되는 규정

위에서 규정한대로 훈육은 교육구의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부과될 수 있다. 특정 학과 성적, 과목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구비조건들을 성취할 수 없도록 학생들을 방해하는 식의 훈육방법이 집행되서는 아니된다.

### C. 단기 및 장기정학에 적용되는 규정

1. 위반의 성질과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부과된 정학과 정학기간은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2. 예외적인 불실행위 ( 제 2 조 참조 ) 라고 지정된 규정위반을 제외하고는 본질상 같은 불실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다른 종류의 교정조치가 학생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에게 먼저 부과되지 않는한 학생은 누구도 정학을 당하지 아니한다.<sup>2</sup>
3. 유치원에서 4 학년 사이의 학생은 누구나 2 학기제나 3 학기제도의 한 학기 동안 수업일자로 10 일을 초과하는 단기정학에 처해질 수 없다. 이들 학생은 장기정학에 처해질 수 없다. 정학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 학과 성적이나 학점을 못 따게 되는 벌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5 학년 이상인 학생은 누구나 2 학기제도의 한 학기 동안 수업일수로 총 15 일 또는 3 학기제도의 한 학기 동안 수업일수로 총 10 일을 초과하는 단기정학에 처해져서는 아니되며 같은 학년도에 2 학기

---

<sup>2</sup> 워싱턴주 개정법 RCW 9.41.280 에 의거하여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행위에 관련된 학생들은 즉각 퇴실될 수도 있다. 워싱턴주 개정법 RCW 28A.635.090 에 의거하여 평화적으로 자기 임무나 공부를 하고 있는 교육구의 어느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완력이나 폭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본 규정에서 예외가 되며 즉각적인 정학과 제적의 원인이 된다. 워싱턴주 개정법 RCW 28A.600.420 에 의거하여 화기를 소지한 학생은 최소 1 년간 복학할 기회가 없이 반드시 제적될 것이다.

제도나 3 학기제도의 한 학기를 초과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학과성적이나 학점을 못따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단일 장기정학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

4. 정학에는 교육구의 소유한 , 임대차 계약을 한 , 사용료를 낸 , 관할하는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허가 및 출입의 거부도 포함된다 .
5. 모든 정학과 거기에 따르는 사유는 정학처분이 부과된 후 24 시간 이내에 교육감한테 서면으로 보고 되어 한다 .
6.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누구나 복학하기 위한 원서를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다 . ( “제적 이후 또는 장기정학동안의 입학 / 복학” 에 관한 교육구의 정책 / 절차 3325 참조 )

#### D. 단기정학에만 적용되는 규정

1. 학생에게 단기정학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학생과 함께 회의를 가져야 한다 . 회의는 (1) 주장하는 불실행위에 대한 설명과 위반규칙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설명 , (3) 부과될 수 있는 교정조치에 대한 설명 , (4) 비난 받고 있는 불실행위에 대한 그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에게 주어야 한다 .
2. 단기정학이 역일 (calendar day)로 하루를 초과할 경우 학생의 정학이나 정학기간 동안 가능한 한 빨리 구두로나 또는 서신으로 학생의 부모 / 보호자에게 정학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이 통고서는 또한 부모 / 보호자에게 약식회의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약식회의 결과로 정학처분이 경감되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통고를 하여야 한다 .
3. 단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누구나 학교로 다시 돌아올 때 정학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과제나 시험들이 그 학생의 학기성적 (2 학기제나 3 학기제 )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러한 과제나 시험들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해당 과정의 학점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인이 된다면 그러한 과제나 시험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측은 당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E. 장기정학이나 제적에 적용되는 규정

1. 학생이 장기정학이나 추방을 당하기 전에 청문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서면통보가 학생과 부모 / 보호자에게 인편이나 배달증명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 본 통고서는 학생과 부모 / 보호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a. 학생이 했다고 주장되어진 불실행위와 위반했다고 주장되어지는 교육구의 규칙을 명세화해야 한다 ;
  - b. 교육구에 의하여 제안된 교정조치와 그러한 주장에 대해 논쟁할 목적으로 청문회를 할 학생 또는 부모 / 보호자의 권리를 설명하여야 한다 ;
  - c. 학생과 부모 /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로 3 일째 되는 날이나 3 일째 수업이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위한 서면으로된 청원서가 교육구가 지정한 직원에게 반드시 접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 d. 만일 그러한 청원이 제때에 접수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가지려는 권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생 , 부모 / 보호자는 본건에 대하여 더 이상 논쟁할 기회 없이 제안된 교정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

청문회 권리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혹시 적용될 수도 있는 “수업일” 계획도 통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

2. 학생과 부모 / 보호자는 교정조치를 취하는 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반드시 수업일자로 3 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구해야 한다 . 만일 청문회를 하기 위한 신청이 제때에 접수되지 않으면 교육구측은 학생과 부모 / 보호자가 청문회를 가질 권리를 취소한 것으로 생각하여 교정조치를 부과하는 통고서의 배달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수로 4 일째부터 제안된 교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 F. 제적에 적용되는 규정

1. 위반의 본질과 상황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제적의 가혹함을 정당화해야 한다 .
2. 어느 학생도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다른 종류의 교정조치가 실패했다고 믿거나 만일 적용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제적되지 아니한다 .<sup>3</sup>
3. 제적에는 교육구가 소유하는 , 임대차 계약을 한 , 사용료를 낸 그리고 교육구가 관리하는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허가 및 출입거부도 포함된다 .
4. 모든 제적과 거기에 따르는 사유는 정확처분이 된 후 24 시간 이내에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
5.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은 누구나 복학하기 위한 원서를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다 .

#### G. 긴급퇴실에 적용되는 규정

1. 만일 학생의 존재가 본인 자신에게나 다른 학생에게 또는 교직원에게 급박하면서 지속적인 위험을 제기하거나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수업 , 학과목 , 학교활동 혹은 수업진행에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소란의 위험을 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면 학생은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하여 수업 , 학과목 또는 학교활동으로부터 제거될 수도 있으며 지정된 학교담당자에게 보내질 수도 있다 . 이런 제거는 위험이나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만 계속하거나 또는 교장이나 교장의 지명인이 합당한 훈육벌칙을 줄 때까지만 계속하여야 한다 .
2. 학생을 제거한 다음 교장이나 교장의 지명인은 가능한 한 빨리 학생을 회견하여 적당한 교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런 회견을 하기 위해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 수업일이 시작되는 그 이후로 미루어져서는 아니된다 .
3. 학생이 제거되었다가 다시 수업이나 활동으로 돌아오기 전이나 돌아올 때 교장이나 교장의 지명인은 취해진 행동 때문에 학생을 제거했던 해당 직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 H. 긴급제적에 적용되는 규정

1. 만일 교장이 학생의 존재가 학생자신이나 다른 학생 또는 학교직원에게 즉각적이면서 지속적인 위험을 제기하거나 또는 수업진행에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방해 위협을 충분히 제기한다고 믿는 이유가 있으면 긴급조처로 학생은 교장에 의하여 즉시 제적될 수 있다 . 긴급제적은 교장 / 교장 지명인이 취소할 때까지 계속되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청문회 절차와 정책 3324 에 나와 있는 상소절차에 따라 수정되거나 바뀔 때까지 계속된다 .

---

3 워싱턴주 개정법 RCW 9.41.280 에 의거하여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 이러한 행위에 관련된 학생들은 즉각 퇴실될 수도 있다 . 워싱턴 주 개정법 RCW 28A.635.090 에 의거하여 평화적으로 자기 임무나 공부를 하고 있는 교육구의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원력이나 폭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본 규정에서 예외가 되며 즉각적인 정학과 제적의 원인이 된다 . 워싱턴주 개정법 RCW 28A.600.420 에 의거하여 화기를 소지한 학생은 1 년간 복학할 기회가 없이 반드시 제적될 것이다 .



해당학생은 변호사에 의하여 대변될 수도 있고 증언에 대하여 질문하고 직면할 수 있으며 추정된 불신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원하는대로 증인과 증거소개 목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해당학생과 교육구측 대변인은 상대측이 청문회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어떠한 문서상 및 실질적 증거를 청문회에 앞서 검토할 권리를 갖는다.

해당사건을 청문하기 위하여 교육구측에 의해 지명된 청문회 담당관은 해당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불신행위라고 추정되는 것에 대한 진실성은 오로지 청문회에 제시된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사실조사, 결정, 부과될 교정조치의 본질과 기간을 알리는 청문회 담당관은 서면으로된 판결문을, 만일 있으면 학생의 변호사나 없으면 해당 학생과 부모 /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긴급제적의 경우 결정은 (1) 학교 수업일자로 1 일 이내에 해야하고 (2) 배달증명 우편 (certified mail) 으로 보내며 (3) 긴급제적을 일으키는 긴급한 상황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결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소를 하지 않는 한 청문회 담당관에 의해 결정된 장기정학이나 제적은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학교업무일자 4 일 현재로 부과될 수 있다. 긴급상황이 계속되거나 또는 첫번째 경우에 있어서 긴급제적을 일으키는 행동에 대한 교정조치로서 어떤 긴급제적은 청문회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될 수 있다.

### C. 장기정학이나 제적을 부과하는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상소

어느 학생이나 부모 / 보호자도 장기정학과 제적을 부과하는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고자 하는 의향을 나타내는 학생의 통고서는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학교업무일자로 3 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교육구의 교육감실이나 청문회 담당관 사무실로 접수되어야 한다.

만일 시간에 맞게 항소가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학생자신에게나 다른 학생 및 학교직원에게 급박하면서 계속적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결론이 결정에 포함되면, 청문회 담당관에 의하여 미결로 남아있는 긴급제적은 방해 받거나 정지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정학 및 제적은 항소기간 중 연속적인 수업일 (consecutive school days) 로 10 일까지 또는 항소가 판결이 날 때까지 두 가지 중 짧은 쪽을 부과할 수 있다. 항소기간 중 임시적으로 학생이 학교에서 제외되었던 어떤 날짜도 정학과 제적기간에 가산되며 또한 학생의 정학과 제적을 제한하거나 연장시키지 아니한다.

이사회에 대한 항소는 장기정학이나 제적의 항소에 대한 교육구정책과 워싱턴주 행정법 WAC 392-400-315 및 -320 에 따라 수행된다.

## 제 12 조 학생의 제반 기록 보관 (절차 3300P)

훈육에 관한 서류들은 각 학생들의 초등교육 전 과정을 통하여 유지된다. 이 서류들은 교정 조치가 필요한 행위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참고로 사용될 수 있다. 누진적 교정조치 또는 합당하지 못한 행동의 양상이나 유사한 반복 위반들에 대한 훈육조치는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다.

학생의 출석

헤드럴웨이 교육구 이사회는 학생이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본 교육구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숙달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진도와 학생들이 교육구를 떠나 세상으로 진출할 때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습관을 키우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다. 이사회는 정기적이며 시종일관되는 출석은 교육구, 학교, 부모 / 보호자, 학생간의 동일한 책임을 가진 파트너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은 :

- 시간에 맞게 각 교실에 도착하고 배울 준비를 할 책임이 있다 ;
- 출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화할 의무가 있고 부모의 자녀교육 중재전략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
- 출석과 관련하여 교육구과 학교의 시책 및 절차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부모 / 보호자는 :

- 의무적으로 학교에 출석할 연령에 있는 자녀들을 제시간에 맞춰 출석하게 하고 워싱턴주 법률에 따라 공부할 준비를 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
- 출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화할 책임이 있고 자녀교육의 중재전략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
- 정기적 출석의 중요성을 학생에게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 ;
- 양해를 얻은 결석과 미리 조정된 결석에 대해 확인하도록 학교와 연락할 책임이 있다 ;
- 무단결석에 대한 학교측 훈육조치를 지지할 책임이 있다 .

학교측은 :

- 학교출석과 연관된 워싱턴주 법률과 교육구시책을 부모 / 보호자와 학생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
- 정기적 출석의 중요성을 학생에게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 ;
- 학생의 출석을 감시하고 그러한 출석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할 책임이 있다 ;
- 무단결석 및 장래 무단결석으로 인한 결말에 대해 부모/보호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 학생의 결석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의를 마련하고 그런 결석을 줄이도록 고안된 중재교육을 제안하거나 이행할 책임이 있다 ;
- 결석한 결과로 훈육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
- 법률이 요구한대로 무단결석을 다루기 위하여 법원중재를 도모하는 교육구과 의사소통을 하고 협조할 책임이 있다 .

교육구당국은 :

- 학교출석과 관련하여 워싱턴주 법률과 교육구시책을 부모/보호자, 학생 및 학교에 알릴 책임이 있다 ;
- 학교출석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런 기준을 집행하는 절차를 세우는데 책임을 진다 ;

- 결석으로 인해 훈육조치를 받은 학생을 위한 적법절차 (due process) 를 밟도록 학교 측을 보조할 책임이 있다 ;
- 법률이 요구한대로 무단결석을 다루기 위하여 법원중재를 도모하는 학교를 보조할 책임이 있다 ;
- 워싱턴주 법률과 교육구시책에 따라 학교를 감시할 책임이 있다 ;
- 교육구의 시책과 절차를 연계적으로 검토할 책임을 진다 .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각 학급의 교육목표로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고 믿음성을 주는 일생동안의 습성을 키우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

헤드럴웨이 교육구의 위원회는 교육감이나 지명인에게 워싱턴주 법률과 규정을 이행하고 학생 모두가 정기적으로 출석을 할 것을 장려하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

## 출석정책에 동반하는 행정절차

( 정책 3120P )

### 의무출석

8 세 이상 18 세 이하 모든 아동의 부모 / 보호자는 자녀를 학교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 학교가 회기중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아닐 경우 자녀 풀 타임으로 출석할 책임이 있다 :

1. 자녀가 공인된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
2. 주법률이 지정한대로 자녀가 가정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
3. 주법률이 지정한대로 자녀가 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 ;
4. 주법률과 아래에 지정한 표준에 따라 학교로부터 출석이 양해된 경우 ;
5. 자녀가 16 세 이상이며 , 그리고 :
  - a. 자녀가 정기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으며 부모 / 보호자가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동의하거나 주법률에 따라 자녀가 규정상 재제가 철회되었을 경우 ;
  - b. 자녀가 이미 졸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었을 경우 ;
  - c. 자녀가 워싱턴주 교육위원회 규칙과 규정에 따라 학업능력 자격증을 받았을 경우 .

6 세 및 7 세의 아동들은 입학할 의무가 없지만 , 일단 입학한 후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단 결석 시 이에 대한 학칙이 적용된다 :

1. 아동이 교육구 당국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출석을 면제 받은 경우 ;
2. 무단 결석 신청시 양식이 부모에게 전달되기 전에 아동의 입학이 정식으로 취소된 경우 ;
3.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파트 타임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 .

### **양해받은 결석과 무단 결석**

학생들은 매일 모든 수업시간에 출석하도록 되어있다 . 교사는 결석과 지각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한다 . 학교는 이런 기록들을 수집하여 보관해야 한다 .

1. 양해 받은 결석. 다음은 결석과 지각에 대하여 양해가 될 수 있는 유효한 사항이다 .
  - a. 학교가 승인한 활동에 참여 , 양해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결석은 반드시 관계직원에게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결석하기 전에 영장이 미치는 교사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
  - b. 질병 , 건강상태 , 긴급한 가정상황 , 종교적인 이유 또는 교육기회와 부모 / 보호자가 요청하여 하게되는 결석 , 양해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의 결석은 아래에서 설명하는대로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학생의 학업진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

부모 / 보호자가 승인한 이틀이 넘는 ( 미리 조정된 결석 ) 활동을 위한 결석은 결석하기 적어도 3 일전에 결석에 대한 허락을 서면으로 요청하면서 적어도 3 일전에 미리 학생담당 교사로부터 보충과제를 구해 다음번 지정된 시간대에 완수한 과제를 제출하여 학업 진도에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
  - c. 훈육조치나 단기정학에서 초래되는 결석 ,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훈육 방편으로서 한 학급이나 여러 학급에서 제거된 학생들이나 또는 단기정학에 처해있던 학생은 학급으로부터 거부된 동안 못한 과제나 테스트를 보충해야 하며 만일 그러한 과제를 끝내지 못하면 해당과정의 학점을 얻지 못하게 된다 .
2. 무단 결석. 교장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결석과 앞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양해받지 않은 모든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간주한다 .

3. 지각. 앞에서 기술된 양해 받은 결석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학교나 교실에 늦게 도착하는 학생들은 무단 지각으로 간주한다. 한 학급이나 하루 중에서 3분의 1 이상의 시간이 지나 늦게 도착하는 중등학생은 그 학급 혹은 그날을 결석으로 간주하며 지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수업 시작 30분 이후에 학교나 교실에 늦게 도착하는 초등학생 혹은 학교가 파하기 30분 전에 조퇴하는 학생은 반나절 결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검증
  - a. 양양해 받은 결석이나 지각은 결석한 날로부터 학교 업무일자로 2일 이내에 부모나 보호자, 법적으로 부권의 제재를 받을 의무가 없는 학생 또는 성인인 학생이 학교장이 규정한 방법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5일을 계속해서 결석한 후나 또는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한학기 동안 총 10번 결석할 경우 미리 양해가 된 결석이 아닌 이상 의사가 서명한 사유서를 요구 받을 수도 있다.
  - b. 서면으로 된 확인서를 받았다 해도 학교담당관은 결석에 대해 양해를 받기 전이나 후에 이러한 결석이 학생의 학업진도에 끼치는 영향과 양해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결석에 따른 주변환경을 조사할 재량권을 갖는다.

### 정규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절차

#### 1. 의사소통

- a. 본 교육구는 학생의 관리 및 책임이라는 소책자를 통하여 모든 학생에게 교육구의 출석절차에 대한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소책자는 학년초에 학생 모두에게 제공되며 학년도에 늦게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는 등록할 때 제공될 것이다.
- b. 각 학급에 대해 해당 교사가 특정 수업의 출석과 기타 강의 목표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 2. 지각

무단 지각은 매번 할 때마다 학교행정관이 결정한 훈육조치 (정학과 추방을 제외한 교정조치)나 교사들에게 위임된 훈육조치를 받게 된다. 첨가하여 무단지각을 3번 하면 서면이나 전화로 부모/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며 3번 지각은 결석 한번으로 간주하며 양해를 받은 결석과 받지 않은 결석에 대하여 아래에 규정한대로 역점을 두어 다루게 된다.

#### 3. 무단 결석

(지각보다 더 긴) 어느 기간 동안의 결석도 아래에 있는 (a)항에서 설명하는 결과로 취급한다. 통고, 회의 및 무단 결석에 대한 소송신청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래에 서술되어 있듯이 보통 학교업무의 절반이상이 되는 시간이나 수업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던 무단결석 한번으로 간주한다.

a. 결과

- (i) 무단결석을 한 학생에게는 학생이 결석하는 동안 만기가 된 성적평가를 받는 활동이나 과제에 대한 학점 취득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 (ii) 학생은 또한 빠진 시간을 학교측에서 결정한대로 보충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훈육 조치의 예로는 방과후 또는 휴식시간에 남아있기, 학교 또는 지역사회 봉사시간, 실제 수업시간을 제외한 학교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으로부터 배제됨을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아니한다. 부과되는 훈육조치 기간은 가능하면 무단 결석 중에 빠진 시간과 동일하도록 한다. 훈육조치는 정확으로 조치될 수 없다.

b. 통고 학교측은 현 학년도 어느 달 중에 무단으로 결석을 한번 하고 난 후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서면이나 전화로 학생의 부모 / 보호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이러한 통고는 무단 결석을 또 할 경우에 생기는 결과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어야 한다.

c. 회의 한 달에 2 번 무단 결석을 하게 되면 학교측은 학생이 결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결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의 중재안을 확인할 목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비교적 편리한 시간에 학부모 보호자 및 학생과 함께하는 회의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중재안들은 학교담당관이 판단하기에 합당하다고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 학생의 교육프로그램 조정;
- 좀더 개인의 특수사정에 맞춘 강의나 모자라는 보충강의의 제공;
-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 결석하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보충서비스를 받는데 학생을 돕기;
-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도록 고무하는 훈육조치의 부과 및;
- 특수교육이나 기타 교육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학생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기.

모든 경우에 있어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는 학교 출석규정과 적당하다고 확인한 중재안의 윤곽을 세우는데 서면동의 해야한다.

만일 부모 / 보호자가 날짜를 정한 회의에 불참하면 회의는 학생과 학교담당자와 함께 이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의 결석을 줄이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나 계획된 조치는 부모 /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d. 무단결석에 대한 소송신청. 만약 위에서 확인된 여러가지의 중재안이 학생의 결석을 상당히 줄이는데 있어서 그다지 효과가 없으면 학교측은 어느 한 달에 무단결석을 7 번째 하는 날 보다 늦지 않게 또는 그 학년도에 무단결석을 10 번째 하는 날보다 늦지 않게 학생이나 부모 / 보호자 또는 학생과 부모 / 보호자 양측 모두가 워싱턴주 개정법 RCW 28A.225.010 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신청의 출원을 미성년자법원에 시작하도록 무단결석을 책임 맡고 있는 교육구담당관에게 연락을 하여야 한다.

4. 양해받은 결석

a. 결과 과제, 활동 및 양해 받은 결석기간 중에 빠트린 성적평가의 출석 / 참여 부분은 교사가 마련한 방식으로 보충할 수 있다.

b. 회의 한달 이내에 양해 받은 결석이 5 번 이상이거나 그 학년도 내에 10 번 이상이면 위의 무단 결석에서 명시한대로 학교측은 학생이 결석하는 원인을 분석할 목적과 이와 같은 결석을 줄이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중재안을 확인할 목적으로 학생과 부모와 함께 관련된 모든 사람이 비교적 편리한 시간에 회의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

## 제 14 조      괴롭힘, 위협 ( 협박 ) 및 불량행위 (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

( 정책 3207 )

교육구는 모든 학생, 교직원, 자원봉사자, 보호자들이 괴롭힘이나 위협 혹은 불량행위 (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 가 없는 안전하고 예의 바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괴롭힘, 위협, 혹은 불링이란 고의적으로 한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조상, 출신국, 성별, 성적체감 ( 性正體感 ) 을 비롯한 성적취향, 정신적, 신체적 장애 [RCW 9A.36.080(3)] 의 특징을 의도하는 서신, 말, 신체적 행위 혹은 다음과 같이 두드러진 기타 특징을 서신, 말, 신체적 행위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

- 학생을 신체적으로 해하거나 학생의 소유물을 훼손하는 행위
- 학생의 교육에 상당히 방해를 주는 행위
-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교육분위기에 위협이 되는 가혹하고 지속적이며 파급적인 행위
- 학교 운영 질서에 크게 방해가 되는 행위

“두드러진 기타 특징”에는 신체적 외모, 의복 혹은 기타 장식, 사회경제적 신분, 성별정체 및 혼인여부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 괴롭힘, 위협 혹은 불량행위 (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 에는 모욕, 소문, 농담, 빈정거림, 수치를 주는 말, 그림, 만화, 장난, 몸짓, 신체적 공격, 위협과 같은 여러 형식의 행위 혹은 서신, 구두, 신체적인 기타 행위를 말하며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 “고의적인 행위”는 어떤 행위 ( 들 ) 로 인한 결과보다는 한 개인이 선택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적용된다 .

이 정책은 한 개인의 종교적, 철학적 혹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을 금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표현이 교육적 분위기를 본질적으로 방해치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되는 것이다 . 괴롭힘, 위협 혹은 불량행위 (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 수준에 상응하지 않는 여러 행위들도 다른 해당 교육구의 정책 혹은 학교, 교실 혹은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 .

이 정책에는 상기에 언급된 규정 외, 모든 형식의 성적 괴롭힘 ( 성희롱 ) 에 대한 금지도 포함된다 . 성적 괴롭힘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 제의나 요청, 언급, 만화, 풍자, 말이나 신체적 접촉 행위 혹은 협박으로 성적인 성질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성적 괴롭힘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 어떠한 행위나 또는 대화가 개인의 수행능력을 방해하고 교육 혹은 업무 분위기를 위협적이고 부적당하거나 불쾌한 분위기로 조성할 경우
- 성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의 요구를 승낙하는 것이 교육이나 업무의 기회 또는 기타 혜택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표명하거나 암시할 경우
- 성적인 요구를 받아주거나 거부하는 것이 교육, 업무 혹은 기타 학교와 관련된 결정에 있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경우

성적 괴롭힘은 학생 대 학생, 성인 대 학생, 학생 대 성인, 성인 대 성인, 남자 대 여자, 여자 대 남자,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로 발생할 수 있다 .

교육구의 주의를 요하는 성적 괴롭힘, 위협 혹은 불량행위 (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 혐의에 대한 보고나 이의제기 및 항의건은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본 정책의 절차에 따라 교육구의 권한 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교정조치를 취한다 .

이러한 행위의 발생횟수와 심각성에 따라, 이 정책 위반에 대한 합당한 대응방법에는 피해자가 받은 영향과 상황을 바로 잡고 범법자의 행동 변화를 위한 중재, 카운슬링, 교정, 징계조치 및 / 혹은 법 집행기관에

의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범법 비행 사실은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될 것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는 법에 따라 법 집행기관이나 아동보호국에 신고된다. 이 정책의 목표에는 적합한 중재, 긍정적인 상황 회복, 및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기타 사람을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괴롭힘이나 위협 혹은 불량행위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에 가담하는 학생, 교직원, 교육구 계약자들은 그에 합당한 징계, 제재 혹은 기타 중재 조치를 받게 된다. 학교 방문객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에 관여될 경우, 학교 소유지 접근과 학교 활동을 제한하며, 그들의 행위는 해당될 경우 해당 당국에 신고된다.

괴롭힘이나 위협 혹은 불량행위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반복하는 행위 역시 이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해당 문제를 신고한 신고인이나 증인을 상대로 강압, 차별대우, 보복하는 행위는 교육구 정책 혹은 기타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그에 합당한 징계,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고의로 거짓혐의사실을 신고하거나 방증 혹은 보고하는 사람 또한 교육구 정책 혹은 기타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그에 합당한 징계,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된다.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자원봉사자 및 기타 관련인들은 이 정책을 인지해야 하며, 해당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정책은 각 교육구 건물 내에 게시되어야 하며, 각 학생, 교직원,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를 위한 안내책자에 제시해야 한다. 교육구 직원들에게는 이 정책에 따른 괴롭힘에 대한 구별과 예방 그리고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합당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감이나 그 지명인은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연령에 합당한 정보제공, 이정책에 대한 교육, 성적 괴롭힘과 그 밖의 형태의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구별 및 예방 등을 포함한 실행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교육감이나 그 지명인은 이사회에 보고할 연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정책과 관련 절차의 사용성과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당 연간보고서에는 해당될 경우, 정책, 절차 변경에 대한 권장사항 (들) 을 포함시키게 된다. 교육감은 검토과정에 가능한 한 교직원, 학생,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들이 관련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에 따른 행정절차 (절차 3207)**

#### **비공식이의제기절차**

비공식 절차는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결하려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용어의 정의는 정책 3207 항 참조, 정책 3207 항과 절차 3207P 에는 모든 형태의 부당한 괴롭힘과 성적 괴롭힘을 금지한다). 이의제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이의제기절차를 밟기에 앞서 해당 교직원의 지도와 함께 비공식 이의제기절차를 사용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접수한 익명이의제기서에 대한 프로그램은 해당 학교수준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이의제기서는 반드시 합당하게 조사되어야 하며, 수속 요건에 일치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비공식적으로 하는 이의제기는 모든 교직원에게 할 수 있지만, 해당 교직원은 언제나 공식 이의제기에 대한 이의제기 당사자의 권리와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 알려주어야 한다. 교직원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비공식 / 공식 이의제기 절차와 또 이의제기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 줄 교직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에 대해 신고를 받은 교직원은 즉시 해당 감독자나 지정 교직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특히, 이의제기 내용이 교직원 자신이 받은 교육으로 해결하기에는 능력 밖의 일이고 심각한 비행혐의 문제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비공식적 교정조치로는 이의제기 당사자로 하여금 해당 혐의자를 일 대 일로 만나게 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행위는 원치 않았고 불쾌 / 부당한 행위였음을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는 방법과 해당 혐의자에게 그러한 행위는 부당하며, 증거가 있거나 계속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교직원의 진술서 혹은 교육구 내의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문제를 검토하는 해당 교육구의 담

당 행정관은 해당 이의제기자를 밝히지 않고 작성한 일반공문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비공식 이의제기서는 학생 당사자, 학부모,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혹은 해당 교육구가 이 건을 좀 더 확실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공식 이의제기서로 변경될 수 있다.

### 공식 이의제기

비공식적으로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악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에 대해 이의제기절차를 밟은 사람이라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당사자에게는 해당 이의제기건이 극비로 조사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다. 어떤 내용이 밝혀질 것인지, 어떤 종류의 소문이 날 것인지는 예측될 수 없다. 이의제기 당사자에 대한 확신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교육구는 이의제기 당사자와 그 증인 (들) 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정책의 보복반대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이의제기를 한 학생 당사자나 증인은 요청하면 교육구에서 실시하는 조사 활동에 부 / 모 혹은 신뢰하는 성인과 함께 할 수 있다. 해당 학교장이나 그 지명인은 해당 이의제기 당사자의 공식 이의제기 관심 여부에 관계 없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당 교육구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하도록 결론 내릴 수 있다. 공식 이의제기에 관계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모든 공식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작성 [3207(1) 양식] 해야 하고 이의제기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악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와 관련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특정 행위나 상태 혹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 B. 공식 이의제기서는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공식적으로 이의가 제기되면 학교장은 교육구의 정책준수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하고, 해당 사무실로 이의제기서 사본을 발송해야 한다. 학교장을 상대로 하는 이의제기는 교육구의 정책준수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C. 해당 교육구는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악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에 대한 모든 서면으로 된 공식 이의제기와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이의제기당사자의 공식이의제기 관심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학교장이나 교육구의 정책준수담당관은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정보에 따라 교육구에서 공식 이의제기서를 초안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D. 해당 학교장이나 그 지명인은 교육구의 정책준수담당관과 상담하여 학생이 학생을 상대로 한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악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한 결과는 교육구의 정책준수담당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 E. 교직원이 관련된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악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에 대한 이의제기건은 Title IX 담당관 (정책준수 담당관) 에게 의뢰해야 하며, 이 담당관은 해당 학교장과 기타 감독자 및 교육구의 행정관과 상의하여 조사에 임한다.
- F. 해당 조사관은 조사를 마치면 이의제기건에 대한 전체 보고서와 조사결과를 작성해야 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삼십 (30) 일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답을 해야 한다.
  - 1) 교육구가 교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혹은
  - 2) 현재까지 당 조사가 완결되지 않았으며 계속될 것이다, 혹은
  - 3) 교육구에 발생된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악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가 발생했다는 적절한 증거가 없다.
- G.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정조치는 신속한 방식으로 시행되며, 마땅히 밟아야 할 제기절차와 제기 당한 사람의 법적인 기타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 항소절차

이의제기 당사자가 조사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길 원하면 조사관의 서면회답을 받은 날로부터 십 (10) 일 이전에 항소통지서 [Form 3207(2)] 를 작성해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에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 항소통지서 [Form 3207(2)] 는 이의제기 당사자가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삼십 (30) 일 이내 조사관으로부터 서면 회답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항소통지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항소통지서에는 왜 이의제기 당사자가 교육구에서 추구한 회답과 그 해결점에 동의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항소통지서 적시 접수에 따라 교육감의 지명인은 청문위원회를 선정해야 할 책임을 지며, 항소통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 일 혹은 그 전에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학교장이나 현지 감독자는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청문위원회에서 이의제기 당사자와 관련성이 있고 재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될 경우 증인이나 증언 제시가 허용된다. 청문위원회는 청문회 마감 일자로부터 10 일 혹은 그 전에 서면으로 된 판결문을 교부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1 부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 이사회에 하는 항소절차

이의제기 당사자가 청문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하려면 청문위원회로부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혹은 그 전에 이사회로 항소통지서 [Form 3207(3)] 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는 이사회에 항소통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 일 혹은 그 전에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사회는 청문회가 끝나는 날로부터 10 일 혹은 그 전에 서면으로 된 판결문을 교부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1 부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의제기 당사자가 이사회에서 한 결정에 항소하려면 외부기관에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착수할 권리가 있다.

모든 교육구의 확정된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교직원, 학생 및 정규 자원봉사자들에게 본 정책의 범위가 소개되어야 한다. 교직원들에게는 성적 괴롭힘과 그 외의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에 대한 구별 및 예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교직원에게는 공식 및 비공식 이의제기 절차와 해당 정책과 규정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가 전부 제공되어야 한다. 증명서나 면허증이 있는 전문직 교직원에게는 의심이 되는 아동학대문제를 보고할 법적인 책임과 그러한 책임이 일부 성적 괴롭힘, 그 외 다른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 지 알려 주어야 한다. 공무원직계제도 소속의 교직원 및 정규 자원봉사자에게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그들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성적 괴롭힘과 그 외의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의 구별과 예방에 관해 연령에 맞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나 학부모가 배석한 기타 적절한 때에 본 정책과 기타 교육구의 정책 및 규정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부모에게는 본 정책과 절차 사본 1 부와 성적 괴롭힘과 그 외의 괴롭힘, 위협 및 불량행위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심술 / 강패행위) 의 구별 및 예방 등에 관한 걱정 자료가 제공된다.

매년 교육감이나 그의 지명인은 본 정책과 절차의 사용과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 해당 교육감이나 그 지명인은 검토내용을 근거로 필요하다면 이사회에 보낼 정책이나 규정의 변경에 대한 권장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육감은 검토 과정시 교직원, 학생,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 제 15 조 학생과 학생의 소유물에 대한 수색 (절차 3230P)

(절차

교육구 직원은 학생에게 적용되는 법이나 학칙을 위반한 증거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학생을 수색할 수 있다. 교직원들은 긴급 상황 외에는 수색하기에 앞서 학교장에게 학생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의 확증. 수색에 앞서 수색에 대한 근거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확인 :
  - 1) 학생의 수상한 행위, 행동, 활동 ; 2) 정보의 출처 3) 그와 같은 정보의 출처에 대한 확실성
- B. 수상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법이나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인가?
- C. 학생이 해당 물건 자체만으로도 금지되는 혹은 법이나 학칙에 위반되는 품목이나 성분 혹은 물질을 휴대하고 있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가?

수색 시행. 학교장 혹은 학교장의 지명인이 학생의 의복, 개인소지품, 책상, 캐비닛 (locker), 배정 받은 물품보관 장소 혹은 자동차를 수색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수색은 다음 사항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 A. 범죄활동 증거물의 존재 혐의가 있을 경우, 경관에 의한 수색의 적합성에 대해 경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수색에 의해 증거물이 입증된 경우 사법당국에 기소 위탁된다.
- B. 학칙 위반 증거에 대한 혐의가 있을 경우 그리고 수색해 확인될 경우 학생의 징계조치에 따라 서만 처리될 것이며, 수색은 학생에게 호주머니, 지갑, 핸드백, 책가방 (배낭), 운동가방에 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도록 요청해 수행한다.
- C. 개인 수색에 학생이 협조하길 거부할 경우, 학생에 대한 학교의 수색 시행 목적을 학부모 혹은 법적보호자에게 알려 질 때까지 학생을 보류해야 한다. 만약 적정 시간까지 학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을 수색할 수 있다.

### 학생의 캐비닛, 책상 및 보관장소

캐비닛, 책상 및 보관장소는 교육구의 재산이다. 배정된 캐비닛, 책상 및 보관장소에 대한 합당한 관리는 학생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학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학생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학생은 자신에게 배정된 캐비닛의 문은 닫아 잠그도록 권장한다.

학교장은 학생에게 사전의 통고 없이 그리고 수색을 통해 특정 학생의 법이나 학칙위반의 증거가 드러날 것이라는 납득할만한 혐의가 없어도 모든 캐비닛, 책상, 보관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분실된 도서실 책, 교과서, 기타 학교 재산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모든 캐비닛, 책상, 보관장소 등의 청결유지 및 건강과 안전에 유해할 가능성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언제든지 관리상의 점검 또는 건강과 복지 점검이 시행될 수 있다.

학교측은 정기적으로 캐비닛을 점검함으로써 교육구의 소유권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학생의 캐비닛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약소하다.

학생의 캐비닛을 수색하는 중에 수색 교직원이 캐비닛 내에 금지품이 숨겨져 있는 상자 (용기) 를 발견할 경우, 교육구의 학생과 개인 소유물의 수색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자를 수색할 수도 있다. “상자 (용기)” 는 이 정책의 목적상 금지품이 숨겨질 수 있는 의복, 핸드백, 지갑, 책가방 (배낭), 운동가방, 기타 모든 물건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제 16 조 교내에서의 약물복용

( 정책 3416 )

워싱턴주법에는 제한된 상황에 한해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약물복용을 관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 보호자, 진료원들은 가능하다면 학생에게 등교시간 이외 약물을 복용하도록 권장한다. 약물에 대한 정의는 처방약품이나 일반 시중의 모든 의약품을 일컫는다. 학생은 약제 또는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분배하거나, 투여할 수 없다.

주사로 약을 투여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예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사로 약을 투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학부모 / 보호자는 승인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 학생이 스스로 약을 투여하는 경우 학부모는 승인서 / 허가서 (permission/release form) 에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승인은 유면허 건강관리 전문의가 작성한 치료계획서와 함께 서명과 날짜를 기입한 지시서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당뇨병 관련 약들은 정책 3415 에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보육원 ~ 5 학년 학생들은 학교장이나 양호교사의 승인서 없이는 교내에서 일반시중약품, 처방약, 약제 / 의약품을 지참할 수 없다.

6~12 학년 학생들은 아래에 규정된 경우 이외는, 교내에서 일반시중약품, 처방약, 약제 / 의약품을 지참할 수 없다.

- A. **처방약품** - 경우에 따라, 학부모 / 보호자, 교장, 양호교사가 생각하길 학생이 처방약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하다고 보는 경우 약품지참을 허용한다. 단, 해당 학생은 부모와 의사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허가서에는 학생의 성명, 복용 (투여) 분량과 날짜, 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약병에 부착된 원래벨에 기재된 대로) 하루분량치 (의료용 흡입기는 본 요건에서 제외된다) 만 지참할 수 있다. 이 허가서는 규제용 약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서 원본은 양호실에 철한다.
- B. **비처방약제** - 6~12 학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교내에서 일반시중약품 (비처방약), 처방약, 약제 / 의약품을 지참할 수 있다.
  - 학생은 부모 / 보호자로부터 받은 약물복용허가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그 허가서에는 의약품 종류와 복용분량이 적혀져 있어야 한다.
  - 학생은 반드시 하루분량치만 지참할 수 있다.

( 교내에서의 약물복용 - 정책 / 절차 3416 항에 관한 원본은 교육감실이나 교육구의 웹사이트, [www.fwsd.wednet.edu](http://www.fwsd.wednet.edu) 에서 입수할 수 있다. )

## 제 17 조 아동보호 문제

헤드럴웨이 교육구는 양측부모 사이에 법정명령 (예: 이혼선고 및 양육계획) 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명백히 “언제라도 접근불가” 또는 학교에서 부모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제한하는 형식의 명령과 같은 인증받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인증 받은 사본은 법원서기로부터 얻은것만 되며 명확하게 그러하다고 도장이 찍혀있거나 날인이 되어있다.) 그런 경우에 법정명령위반과 관련하여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찰에 연락할 것이다. 만일 학교직원의 판단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학교측은 부모의 다른 한편이 학교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접근금지” 명령을 제출하는 부모 한편에게 알리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법정명령과 관련하여 부모사이의 분쟁은 학교가 아닌 법정에서 해결되기를 당 교육구는 희망한다.

## 제 18 조 아동보호소 (CPS) 에게로의 보고

교사, 카운슬러, 행정관, 아동보호시설 직원 및 학교간호원은 워싱턴주 법률에 의해 아동학대 또는 무관심 (neglect) 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아동보호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보고 자체는 학대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 아니고 학대나 무관심 (neglect) 이라고 의심되는 사건을 아동보호소에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보호소와 법률집행 담당자들은 각 사건마다 조사할 책임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취해진다. 학교직원이 학대와 무관심이라고 의심되는 것을 선의로 보고하는 것은 책임 (liability) 으로부터 벗어나며 보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범에 해당이 된다.

## 제 19 조 학생 교육기록부

부모와 성인인 학생 (18 세에 도달한 학생 )은 (1) 연방 가정교육권리와 사생활보장법 (FERPA) 에 따라 학생의 교육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하는 권리 , (2) 학생기록이 부정확하지 않고 오도되어 있지 않고 사생활 및 기타 법률에 대해 학생의 권리가 위배되어 있지 않음을 확실하게 하는 학생기록의 수정을 요청하는 권리 , (3) 법률에서 동의 없이 발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의 학생기록을 발표하도록 동의하는 권리 , (4) 연방가정교육권리와 사생활보장법 (FERPA) 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불평을 미 교육성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5) 교육감실로부터 학생의 기록에 대한 교육구시책의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등에 갖는다 .

본 교육구는 교육구 외부의 개인이나 기관들로부터 ( 예 , PTA, 후원회 , 대학 , 군 기관 , 언론 매체 , 사법 기관 등 ) 학생들의 이름과 주소 , 기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 본 교육구는 별도로 교육구와의 계약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 한 상업적인 목적의 개인이나 기관에 절대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교육구는 달리 부모나 성인 학생들의 서면 통지를 받는 경우 이외에는 위에 기술된 사법 기관이나 개인 , 기타 기관 등에 디렉토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디렉토리 정보”란 학생의 이름 , 학생의 ID 번호 ( 하나 이상의 요인에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번호로 교육기록부를 열람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만 ) , 사진 , 주소 , 전화번호 , 출생일 및 출생지 , 등교일자 , 공식적으로 인정된 활동에의 참여 , 운동선수의 경우 체중과 키 , 학위 및 수상 기록 그리고 이전에 최근까지 다녔던 학교 등으로 정의된다 .

## 제 20 조 연방프로그램의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 정책 3232)

교육구는 아래에 개설된 보호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학생에게 연방정부 재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당 학생의 학부모 / 보호자 및 유자격 ( 부모로부터 법적으로 해방된 학생 혹은 18 세 이상의 ) 학생 당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와 같은 설문조사를 학생에게 실행할 수 있다 . 학생은 연방정부 재원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의 일부로 아래와 같은 정보가 드러나는 설문조사 , 분석 혹은 검토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 .

- 정치상의 제휴관계 .
- 학생 혹은 학생의 가족에 관한 정신적 , 심리적 문제 .
- 성적인 행동 및 지향 .
- 불법적인 태도 , 반사회적 태도 , 인정한 유죄 , 저질적인 행동 .
- 학생 가족구성원에 대한 비평 .
- 변호사 ( 검사 ) , 의사 , 성직자 등과 같이 법으로 인정 받는 특권 혹은 유사 관계 .
- 학생 혹은 학생 가족의 종교적 관습 , 교단가입 , 신념 .
- 소득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 자격 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혹은 그와 같은 프로그램 하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법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

학부모 / 보호자 및 유자격 학생에게는 그들에게 통지되는 다음 활동들에 대해 참가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

- 학생으로부터 획득한 개인의 정보를 마케팅 혹은 판매를 목적으로 징수 , 공개 ,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정보를 배부하는 일과 관련되는 활동 .
- 연방정부 재원에 의하지 아니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 보호대상 정보 ( 상기에 열거한 8 가지 정보 중 1 가지 이상이 들어 있는 설문조사 ) 에 관한 설문조사 시행
- 해당 학생이나 다른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즉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고 , 출석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관장 혹은 사전에 예정한 비응급 , 침입성 신체검사 혹은 검진 . 다만 , 주정부법에 의해 허용 또는 의무화된 청력 , 시력 혹은 척추 측곡 검사는 제외된다 .

학부모 / 보호자 및 유자격 학생은 교육구에서 설문조사를 실행하기에 앞서 본인의 요청 하에 다음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

- 상기에 설명된 학생의 보호대상 정보 설문조사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안내자료 포함 ).
- 상기에 언급된 목적으로 마케팅 , 판매 혹은 배부를 위해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된 문서 .
- 교육과정의 일부로 사용된 안내자료 .

교육구는 학부모 / 보호자 및 유자격 학생들에게 PPRA( 학생의 권리 보호 수정조항 ) 에 포함된 그들의 권리에 관해 매년 통지해야 한다 . 학부모 / 보호자 및 유자격 학생은 PPRA 의 위반사항을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 S.W., Washington, DC, 20202-4605 로 신고할 수 있다 .

## 제 21 조      교육구 공공기록부 입수      ( 교육구 정책 4340 참조 )

RCW 42.56 조에 따라 학부모와 기타 공공인은 주법에 의해 공개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공공기록부를 제외하고 교직원 징계에 관계되는 기록부 등을 포함하여 교육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교육기록을 검토하고 사본을 입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 제 22 조      교육의 기회균등

**헤드럴웨이 교육구**는 모든 연방 규칙과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므로 어느 학생도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임신여부, 혼인여부, 성적취향 또는 성적 주체성 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지각 장애여부를 이유로 들어 불법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동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거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모/보호자나 학생은 교육구나 지방, 주, 연방당국에 불평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문의나 불평은 다음 사람에게 제기해야 한다.

Title 제 IX/RCW 28A.640 편 관리관

Diana Seeley  
Federal Way Public Schools  
31405 18th Avenue South  
Federal Way, WA 98003  
(253) 945-2070.

초등학교 제 504 항 담당관

Chuck Nykreim  
Federal Way Public Schools  
31405 18th Avenue South  
Federal Way, WA 98003  
(253) 945-2082

중고등학교 제 504 항 담당관

Chris Willis  
Federal Way Public Schools  
31405 18th Avenue South  
Federal Way, WA 98003  
(253) 945-2084